

안전검사전문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 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자 격 기 준		
기술인력 기준	검사책임자 (1명)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검사원 (2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전자·건축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교통안전법」에 따른 삭도교통안전관리자 또는 철도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궤도시설의 공사·유지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시설 기준	품 명	규격 및 용도	보 유 기 준
	버니어캘리퍼스	1. 측정범위 150mm 이상	1개 이상
		2. 측정범위 300mm 이상	1개 이상
	각도측정기	측정단위 10분의 1도 이상	1개 이상
	스톱워치	측정단위 10분의 1초 이상	1개 이상
	접지저항계		1개 이상
	절연저항계	1. 정격측정전압 500V에서 측정범위 1,000MΩ 이상	1개 이상
		2. 정격측정전압 1,000V에서 측정범위 2,000MΩ 이상	1개 이상
	전류계	측정범위 600A 이상	1개 이상
	줄자	1. 측정범위 10m 이상	1개 이상
		2. 측정범위 50m 이상	1개 이상
	멀티테스터기		1개 이상

	광파거리측정기	측정범위 1km 이상	1개 이상
	열화상카메라		1개 이상
	진동장비		1개 이상
	슬립테스터기		1개 이상
	와이어로프 테스터기	비파괴검사용	1개 이상